

##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

제정	2011. 7. 27
1차개정	2012. 5. 14
2차개정	2012. 7. 24
3차개정	2012. 12. 31
4차개정	2013. 8. 10
5차개정	2015. 5. 6
6차 개정	2019. 7. 11
7차 개정	2020. 2. 19
8차 개정	2020. 8. 21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아주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및 「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」에 의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(이하 “의과대학”이라 한다)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조문 신설 2019.7.11.]

**제 1 조의 2(평등원칙)** 의과대학은 성별, 인종, 종교, 성적 취향,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평등하게 운영한다.

**제 2 조(학년, 교육과정, 진급)** ① 교육과정은 다음의 두 과정으로 구분한다.

1. 의학입문교육과정(1, 2학년)
  2. 의학교육과정(3, 4, 5, 6학년)
- ② 학사운영은 학년제로 한다.

**제 3 조(수강신청)** 수강신청은 각 학년도 「아주대학교 요람」에 명시된 ‘교육과정표’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**제 4 조(휴 학)**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,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단, 지정 병원의 진단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휴학은 제외한다.
- ③ 1학기 유급 후 이수 학년을 맞추기 위한 차기 학기의 휴학은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**제 5 조(성적평가 및 기록)** ① 성적평가는 평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 할 수 있다.

- ② 임상실습 과목 및 운영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과목은 학년말에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③ 학생은 학점이 확정되기 전 성적, 유급, 졸업유예,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하여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, 이때 이해상충이 있는 교수는 소명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 <신설2019.7.11., 개정 2020.8.21.>

**제 6 조(유 급)** ① 의학교육과정 각 학년말 최종성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.

1. 1, 2학기를 통산한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.0 미만인 자 <개정 2012. 5. 14>
2. 해당과목 교과목 중 낙제과목 (F등급)이 있는 자
- ② 진급탈락(의학입문교육과정) 또는 유급(의학교육과정)한 자의 해당 학년에서 취득한 C+이하의 전공과목 성적은 무효로 한다. (단, 의학과 1학년 전공과목은 제외) <신설 2012.5.14, 개정 2012.12.31., 개정 2020.8.21.>

**제 7 조(의학교육과정 진급요건)** 의학교육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8.21.>

1. 평균평점 2.0 이상인 자 <개정 2012. 5. 14>
2. 낙제과목(F학점) 없는 자
3. 학생봉사실습 이수자 <개정 2015. 5. 6>
4. 심폐소생술 이수자
5. (공인)영어성적 기준 또는 영어대체과목을 통과한 자 <개정 2020.8.21.>

기준	TOEIC	TOEFL			TEPS	과목명	고급 영어1	고급 영어2	영어1	영어2
		IBT	CBT	PBT						
점수	800	94	240	587	640	학점	B0	B0	A0	A0

[조명 변경 2015. 5. 6]

**제 8 조(학생봉사실습)** ① 지역사회 노인과 의대생을 결연하여 노인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의대생은 의사-환자간 의사소통, 약물/질환에 대한 선행학습,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봉사실습을 실시한다. <개정 2015. 5. 6>

- ②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습기간은 3~12월로 한다. <개정 2015. 5. 6, 개정 2020.8.21.>
- ③ 실습종료후 건강일지 형태의 정기방문 상담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한다. <개정 2015. 5. 6>

**제 9 조(기초의학 종합평가시험)** ① 4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년 말에 실시하는 기초의학 종합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.

- ② 평가방법은 해부학, 생리학, 생화학, 약리학, 병리학, 미생물학, 기생충학 등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한다.
- ③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(Pass) 또는 불합격(Fail)로 처리하되 불합격(Fail)한 자는 5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.
- ④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2.19., 2020.8.21.>

**제 10 조(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)** ① 5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년 말에 실시하는 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.

- ② 평가방법은 의사국가필기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. <개정 2013.8.10.>
- ③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(Pass) 또는 불합격(Fail)로 처리하되 불합격(Fail)한 자는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.
- ④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2.19., 2020.8.21.>

- 제 11 조(임상수행 능력평가시험)** ① 임상의학교육과정 중에 있는 자는 임상수행능력평가에 응시하여야 한다.  
 ② 평가과목은 내과학, 외과학, 소아과학, 산부인과학, 정신과학 등 임상의학 분야의 임상술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  
 ③ 평가방법은 OSCE(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) 및 CPX(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)등 실기시험으로 한다.  
 ④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(Pass) 또는 불합격(Fail)로 처리한다.

- 제 12 조(졸업시험)** ① 졸업시험은 최종 학년에 실시하는 정규 모의고사로 같음하며,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 
 ② 졸업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하며,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2.19.>

**제 13 조(재입학)** 재입학 신청자에게는 재입학 후의 수험가능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 14 조(준용)** 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「학칙」 및 「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 
 ② (폐 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「의과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규칙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 
 ② (경과조치)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 
 ② (경과조치) 제10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7조 제5호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